

세무와회계저널
제12권 제1호 2011년 3월 pp.295~323
한국세무학회

M사의 효과적인 세무계획 - 바터거래의 조세마찰 가능성 및 개선방안 -

손 혁* · 박성진** · 이효익***

<요 약>

본 연구는 바터거래를 통한 조세계획의 마찰가능성을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체인 M사의 사례를 기초로 분석하였으며, 조세마찰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바터거래와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사항은 각 채권의 실재성이다. 따라서 바터거래를 수행하는 기업들은 부실채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의 금액 확인을 통하여 가장 기본적인 실재성을 검증하고,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영업부관리 자료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둘째, 과세당국이 바터거래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개별 채권별로 대손요건을 판단하므로 채권별 대손요건을 구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서류로는 외부기관의 확인서 또는 증명서, 사업의 폐지, 행방불명, 무재산 등에 관한 조사보고서 등이 있다.

셋째, 채권 양도금액의 공정한 평가는 바터거래를 통한 거래 당사자간의 매매의사를 간접적으로 확인하여 바터거래를 과세당국으로부터 가장매매가 아닌 실질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세마찰가능성을 감소시킨다.

넷째, 채무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적절하게 대손처리하고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받지 않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채무독촉, 재산회수, 가압류 등의 서류,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환가처분하고 잔여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폐지하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주제어> 바터거래, 조세마찰

*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박사과정, succman@mensakorea.org, 02-760-0502, 주저자

**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박사과정, gangclub2@hanmail.net, 02-760-0501, 교신저자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hilee@skku.edu, 02-760-0502, 공동저자

I. 서 론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증대로 인하여 국가의 기능 및 역할이 양적 또는 질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정부의 재정수요는 급속히 팽창하고 있다. 정부재정의 대부분을 조세로 조달하는 국가는 팽창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과세권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밖에 없으며 증가된 조세부담은 납세자로 하여금 조세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동기를 제공한다.¹⁾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경감시키는 행위에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조세비용을 감소시키는 절세, 위법한 행위 즉 조세규범을 위반하면서 조세비용을 감소시키는 행위인 탈세, 그리고 세법상의 불완전성을 이용하여 납세자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세규범을 적용하여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는 조세회피가 있다. 즉 광의의 조세회피에는 절세와 탈세가 혼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고운성 등, 2005).

최근의 기업의 조세회피는 합병, 분할, 거울거래, 이전가격, 조세피난처, 과소자본, 조세조약, 파생상품, 바터거래(barter-trading)²⁾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거래 내용도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또한 세법상의 미비점을 이용한 공격적인 조세계획(tax planning)을 통한 조세회피행위는 과세당국이 해당 거래를 적발한 경우에도 세법에 근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과세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³⁾

조세회피는 세후 순이익의 증가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세로 인한 현금유출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일반화된 현상이다. 이러한 조세회피현상은 세제의 불합리성이나 공평성의 미흡, 세무공무원의 비리, 정경유착의 관행 등으로 납세자들의 조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납세자의 조세저항요인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게 된다(정종복 등, 2010). 조세회피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면 세수입의 감소로 인한 재정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불공평한 조세부담과 소득의 불균형으로 인한 성실납세자의 납세의욕을 감퇴시키는 폐단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세회피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파악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세법의 정비 등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의해 본 논문은 바터거래를 이용한 신종 조세계획의 사례를 다루도

- 1) 조세는 사회공동체 존립상의 필요 불가결한 재원으로서 국가는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조세정책을 펴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시대 상황에 맞게 조세제도를 개편하여 왔다. 그러나 조세부담자는 조세를 가시적인 대가 없이 일방적인 재산권의 강제이전으로 인식함으로써 납세에 대한 거부반응을 일으켜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다(정종복 등, 2010).
- 2) 바터거래는 무역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로 화폐의 지불 없이 제품 대 제품의 교환으로만 이루어지는 무역방식을 말한다.
- 3) 따라서 사전에 조세를 회피할 의도를 가지고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도록 하는 기업의 다양한 조세회피 전략과 방법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법률적 형식이 아니라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조세의 공평성을 제고하고 과세권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사안이다(김진희 등, 2006).

록 한다. M사의 부실한 자산 중 유가증권(주식과 채권), 매출채권, 대여금 등을 바터거래를 통해 바터(barter)회사에 매각한 M사의 사례를 통해서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의 세무적 마찰을 살펴본다. 또한 신종거래인 바터거래의 조세마찰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에서는 생소하지만 기업 및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경제적 효익을 제공하는 바터거래를 통해 기업들이 효과적인 세무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을 소개하였다. 둘째, 바터거래 자체는 기업의 절세전략 관점에서 합법적으로 세금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이지만 바터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재성이 의문시되는 채권 등을 매각함으로써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켜 과세당국 간의 조세마찰의 가능성이 존재함을 조세심판원의 판결문을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신종거래인 바터거래를 통한 납세자와 과세당국간의 조세마찰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사례연구는 이하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II장에서는 조세회피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과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III장에서는 의료기기 제조판매회사인 국내 M사의 사례를 바탕으로 바터거래의 조세마찰가능성을 분석한다. IV장에서는 바터거래의 효과, 조세마찰 및 조세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V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조세회피의 의의

가. 정의

조세회피(tax avoidance)의 정의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동식(2008)에 의하면 조세회피는 세법규정의 미비점을 이용하여 행해지는 납세자의 조세절감시도⁴⁾로서 세법규정의 ‘문헌에’ 충실하게 법집행을 하면 허용되어야 하는 조세절감시도이지만, 그 규정의 취지·목적에 고려하면 비록 탈세행위는 아니라 하더라도 납세자가 희망한대로 조세절감을 인정할 수는 없는 행위를 의미한다.

고운성 등(2010)은 법률상으로는 합법적인 세금절감행위인 절세와 불법적인 세금절감행위인 탈세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세회피의 개념에 대하여 완벽하게 일치되는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광의의 조세회피에는 합법적인 조세회피와 비합법적인 세금절감행위 모두를

4) 조세절감시도는 합법적인 절세, 불법적인 탈세, 현행의 법망을 교묘히 이용하는 조세회피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세가지 개념은 엄격하게 구분되어 사용되지 않고 혼용되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포괄하는 개념으로써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는 일체의 행위라고 할 수 있고, 협의의 조세회피는 위법적인 탈세가 아닌 조세부담감소 행위라고 정의하였다.

김두형(2008)은 조세회피를 납세자가 일정한 경제적 활동을 함에 있어서 통상적인 범형식이나 거래형태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우회행위나 다단계행위 등 이상한 범형식이나 처리방법을 선택하여 통상적인 범형식을 선택하였을 경우에 생기는 조세부담을 경감하거나 배제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위에서 소개한 조세회피의 정의를 요약하자면 ‘조세회피’란 탈세(tax evasion)와 절세(tax saving)의 중간개념으로 위법적이지는 않지만 현행의 미비한 법규정을 교묘히 이용하여 정상적인 범형식이나 거래형태와는 다른 변태적 방법 등으로 조세부담을 배제하거나 경감시키려는 조세절감시도의 한 형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⁵⁾

나. 성립요건

조세회피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이동식(2008)은 다음의 조건을 언급하였다. 첫째, 경제적 실질에 기초하여 과세·감면하려는 세법규정이 존재해야 한다. 조세회피행위와 같은 법률회피행위는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회피하고자 하는 ‘강행법규’가 존재하여야 성립될 수 있다. 세법에서 그러한 강행법규는 통상 적극적으로 과세요건을 규정한 법규가 되겠지만, 세 부담의 감면을 규정한 법규도 될 수 있다.

둘째, 이상한 거래형식을 선택하고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야 한다. 조세입법자가 경제적 실질을 과세요건으로 인식하면서도 외형상으로는 ‘경제적 실질’자체를 과세요건으로 설정해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달성함에 있어서 납세자들이 통상적으로 선택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방식을 과세요건으로 규정해 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 납세자들이 동일한 경제적 실질을 입법자가 과세대상으로 규정해 둔 법률행위방식이 아닌 다른 또는 이상한 법률행위방식을 선택하여 달성한 경우에 있어서 조세회피문제가 발생한다. 이 때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가 조세회피행위로 세법상 부인되기 위해서는 해당 납세자의 거래행위(이상한 거래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이어야 한다.

5) 이러한 조세회피는 회피하고자 하는 기존 세법규정의 내용에 따라 소극적 조세회피와 적극적 조세회피로 나눌 수 있다. 소극적 조세회피는 ‘적극적 과세요건을 규정한 세법규정’을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구성방식을 통하여 인위적으로 과세요건이 미실했던 것처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적극적 조세회피는 ‘조세감면요건을 규정한 세법규정’을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구성방식을 통해 외형상 그 세법규정이 충족된 것처럼 사실관계를 구성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법규정의 해석적용문제로서의 조세회피행위문제는 국내 다른 법령영역에서 ‘탈법행위’로 소개가 되고 있는 ‘법률회피행위’문제가 세법영역에서 논의되는 문제이다. 이러한 조세회피행위는 실체사례에서 가장행위와 매우 유사한 구조를 취하고 있지만, 가장행위는 대상거래행위가 사법상 이미 무효가 됨에 반해 조세회피행위의 경우에는 그 행위가 사법상 유효하다는 점에서 분명하게 구별된다(이동식, 2008).

셋째, 거래행위가 사법적으로 유효해야 한다. 납세자가 선택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이상한 거래행위가 조세회피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행위가 적어도 사법적으로는 유효한 법률행위이어야 한다. 조세회피행위부인의 특색은 이처럼 사법상 유효한 법률행위를 세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넷째, 세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위와 같은 요건이 모두 갖추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세부담의 경감이 초래되지 않는다면 조세회피행위가 될 수 없다. 이때 세부담의 경감에는 실제적인 세액이 줄어 드는 것 이외에도 납부시기가 지연되는 것과 같은 것도 포함된다.

다섯째, 주관적 조세회피의도는 필요하지 않다. 조세회피행위가 되기 위하여 주관적 조세회피의도가 필요한지 여부가 과거에 논란이 되었는데 현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관적 회피의도는 조세회피행위 성립요건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우리 세법에서도 조세회피행위 성립에 주관적 회피의도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학계와 판례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이처럼 조세회피행위에 주관적 회피의도를 요구하지 않는 이론적 이유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조세회피행위라는 것은 그 본질이 세법규정의 해석·적용문제인데 세법규정의 해석·적용에 개인들의 주관적 의도는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 선행연구

corporate trade가 세무계획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소개해준 국내의 최초논문은 정운오·김갑순(2007)의 연구이다. 정운오·김갑순(2007)은 국내기업이 부실매출채권을 corporate trade를 통해 처분한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corporate trade가 세무계획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또한 corporate trade가 회사에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제공함과 동시에 거래의 이해관계자들인 컨설팅회사, 벤더 등에도 경제적 효익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세무계획으로 실현가능했던 것을 통하여 “효과적인 세무계획”의 수립시 고려해야 할 계약적 측면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본 연구도 국내 의료기기 제조판매사인 M사가 절세의 목적으로 이전에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신종 거래인 ‘바터거래’를 세무계획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으며 이러한 바터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재성이 의문시되는 채권을 정상적인 채권에 포함하여 매각함으로써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켜 과세당국과의 조세마찰의 가능성이 존재함을 조세심판원의 판결문을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조세마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 신종 거래를 통한 조세마찰의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논문이 정운오·김갑순(2007)의 연구와는 차별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Ⅲ. 바터거래의 조세마찰가능성

1. 바터거래(barter-trading)의 이해

바터거래(barter-trading)는 금전의 거래 없이 물물을 교환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무역용어로는 ‘물자의 수출과 수입을 하나의 교환방법으로 상호 결부시키는 무역방식’을 의미한다.⁶⁾ 바터 거래는 세계 경기침체와 국내 경제의 불황으로 인하여 미국, 한국 등의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면서 최근에 각광받고 있다. 최근의 바터(barter)제도와 관련된 뉴스보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물물교환 방식 ‘바터’거래 각광(전자신문, 2009.2.18)**

“17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소규모 기업들이 불황을 극복하는 대안의 하나로 과거의 가치 교환 방식인 물물교환, 즉 ‘바터’에 주목하면서 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서비스도 호황을 맞았다고 전했다. 미국의 바터 관련 단체인 국제상호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바터’ 형태의 거래를 한 기업은 25만개에 달했다. 이들 거래의 가치는 총 160억달러(약 23조1200억원) 이상이다. 특히 지난해 소규모 기업간 거래를 현금으로 환산하면 지난 2007년 100억달러보다 늘어난 110억달러를 기록했다. 올해도 이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지난해보다 15% 성장한 총 127억달러 가치의 바터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협회 측은 전망했다……”

최초에 우리나라에 도입된 바터거래는 기업의 재고 및 현금부족 문제 등을 해결해 주는 시스템으로 소개되었으며 2000년 이후 IT산업의 발전과 정보화의 붐을 타고 사이버공간에서 급속하게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최근의 경기침체와 불황으로 인하여 많은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이나 불필요한 잉여자산을 효과적으로 처리한다는 점에서 바터거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⁷⁾

기업간 바터거래는 기업이 갖고 있는 부실자산(이월재고자산, 관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약성 매출채권, 환급성이 없는 유가증권 등), 잉여자산, 또는 저수익 자산을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교환함으로써 이들 자산을 처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하여 자산의

6) 바터무역은 구상무역이라는 용어로도 사용되며 두나라 간에 협약을 맺어 일정기간 동안 서로 수출을 균등하게 진행한 다음 무역으로 차액을 ‘영’으로 만들어 결제자금이 필요 없게 하는 무역의 방식 중 하나이다. 바터무역은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으로 세계무역이 감소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채택된 무역통제방식으로 국가간 무역거래에서는 오래 전부터 바터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7) 2009년의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국제상호무역협회(IRTA) 조사 결과 2008년 물물교환 무역에 전세계 기업 40만곳이 참여, 120억 달러를 거래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10% 이상 성장한 규모이다. 또한 국내 바터시장의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집계는 없으나 2000년 약 8,400억원에서 2010년에는 3조 4,000억원으로 4배 이상 성장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한국일보, 2010. 8. 24)

가치를 회복시키는 경영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⁸⁾

예를 들면, 갑이라는 의류업체가 여름용으로 제작한 여성용 의류를 제대로 판매하지 못한 상황에서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 더 이상 판매할 수 없는 경우 의류업체는 1년 동안 재고자산을 보유하기 보다는 처분하는 것이 경영상 유리할 수 있다. 그런데 갑회사가 철이 지난 재고자산을 아주 낮은 가격에 의류 판매상에 처분하기 보다는 바터거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회사(을)를 통해 매각하는 경우 현재 가격(아주 낮은 가격)의 약 3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Trade-Credit(일종의 할인권, 이하에서는 'T/C'라 함)을 받게 된다. 이러한 T/C는 광고비, 판매촉진비, 전산투자비, 교육비 등에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T/C는 일종의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와 유사한 개념이며 T/C로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은 광고, 판촉, 인쇄, 소모품, 건설자재, 각종 서비스 등이다. 그런데, 원하는 물품을 구매할 때 이러한 T/C만을 사용하여 대금을 결제할 수는 없으며 항상 현금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들이 T/C를 사용한 부분만큼 현금의 지출은 감소시키면서 유동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같은 세금측면에서의 혜택 이외에 다음과 같은 비세금측면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Scholes, M. and Wolfson, M., 2009. Taxes and Business Strategy : A Planning Approach, Prentice Hall, Englewood Cliffs, N.J) 첫째, 갑사가 을사로부터 T/C를 제공 받게 되는 경우 갑사는 T/C를 사용하기 위해 을사와 계약관계가 있는 회사와 거래를 해야 하는데 이는 갑사가 기존에 거래하던 회사와의 거래중단을 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일방적인 거래 중단은 갑사의 입장에서 기존 거래회사와 형성된 신뢰관계를 포기하고 새로운 기업과의 신뢰관계를 맺는 것으로 실무상 번잡스러울 뿐만 아니라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갑사 전체의 입장에서 T/C를 사용하는 것이 현금지출의 감소액 만큼 경제적 효익이 있을 수 있으나, 기업 내부 부서간에는 이해상충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영업부서에서는 기업이 갖고 있는 부실자산(이월재고자산, 관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악성 매출채권, 환급성이 없는 유가증권 등)을 T/C와 교환하여 사용하는데는 큰 불만이 없을 수 있으나 마케팅부서에서는 현금 대신 T/C를 사용하여 광고비, 판매촉진비 등을 지출할 특별한 유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마케팅부서에서는 기존에 거래하던 거래처와 거래를 중단하고 새로운 거래처와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 거래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T/C사용을 꺼릴 수 있다.

8) 기업간 바터거래는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 등에서는 수십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15년 이상 기업의 저수익 자산의 처리뿐만 아니라 현금흐름 개선과 새로운 마케팅기법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바터거래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는 약 10여개 정도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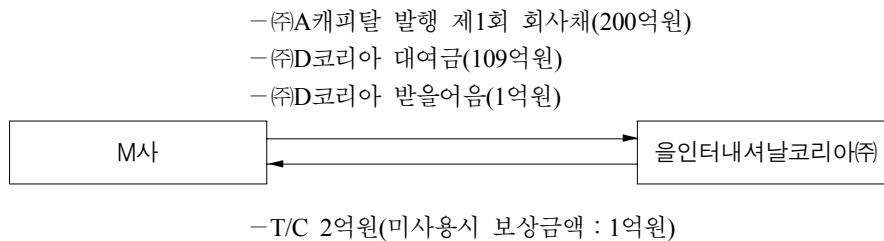
2. 거래내용과 과세당국, M사의 주장 및 조세심판원의 판결⁹⁾

가. 거래내용

(1) (주)A캐피탈 발행 제1회 회사채와 (주)D코리아에 대한 대여금 및 받을어음

M사는 1985.7.2부터 초음파진단기 등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M사가 1998.12.29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주)A캐피탈 발행 제1회 회사채 200억원, (주)D코리아에 대한 대여금 약 109억원 및 받을어음 약 1억원을 2000.12.29에 을인터내셔널코리아(주)에 T/C 2억원(미사용시 보상금액 : 1억원)에 양도하고 각각 약 199억원, 109억원의 투자자산매각손실로 계상하였다. M사가 을인터내셔널코리아(주)와 수행한 거래의 구조를 요약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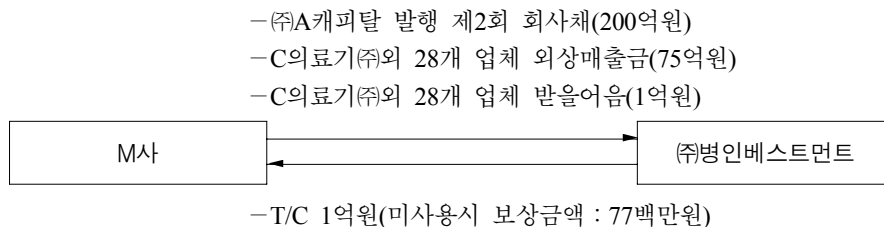
<그림 1> M사가 을인터내셔널코리아(주)와 수행한 거래



(2) (주)A캐피탈 발행 제2회 회사채와 C의료기 외 28개 업체에 대한 매출채권

M사는 M사가 1999.8.24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주)A캐피탈 발행 제2회 회사채 200억원, C의료기(주)외 28개 업체에 대한 외상매출금 약 75억과 받을어음 약 1억원을 2000.12.29에 (주)병인베스트먼트에 T/C 1억원(미사용시 보상금액 : 77백만원)에 양도하고 채권매각손실 약 200억원과 매출채권처분손실 약 75억원을 계상하였다. M사가 (주)병인베스트먼트와 수행한 거래의 구조를 요약하면 다음 <그림 2>과 같다.

<그림 2> M사가 (주)병인베스트먼트와 수행한 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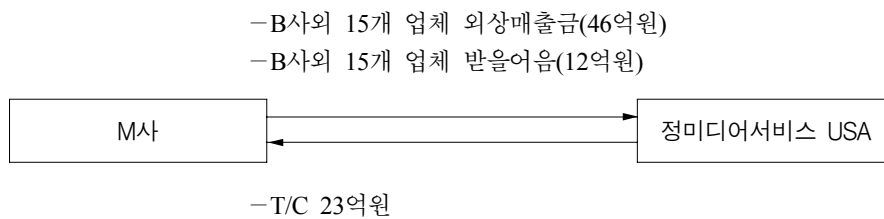


9) M사의 사례는 조세심판원(ntt.go.kr ; 2008.2.29.자로 변경되기 전에는 ‘국세심판원’)에서 검색한 국세심판결정문(국심2003중 1969, 2004.07.14)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본 사례는 2004년 조세심판원 결정 이후 행정소송으로는 연결되지 않았다.

(3) B사와의 15개 업체에 대한 매출채권

M사는 B사와의 15개 업체에 대한 외상매출금 약 46억원과 받을어음 약 12억원을 1999.12.21에 정미디어서비스 USA에 T/C 약 23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약 35억을 매출채권처분손실로 계상하였다. M사가 정미디어서비스 USA와 수행한 거래의 구조를 요약하면 다음 <그림 3>과 같다.

<그림 3> M사가 정미디어서비스 USA와 수행한 거래



위에서 M사가 채권 및 매출채권 등을 을인터내셔널코리아(주), (주)병인베스트먼트, 정미디어서비스 USA에 거래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거래내용

처분대상자산	자산가액	양수회사	처분손실
A캐피탈 제1회 회사채	200억	을인터내셔널코리아(주)	199억
D코리아 대여금	109억		109억
D코리아 받을어음	1억		
A캐피탈 제2회 회사채	200억	(주)병인베스트먼트	200억
C의료기 외 28개 업체 외상매출금	75억		75억
C의료기 외 28개 업체 받을어음	1억		
B사와의 15개 업체 외상매출금	46억	정미디어서비스 USA	35억
B사와의 15개 업체 받을어음	12억		

나. 과세당국, M사의 주장 및 조세심판원의 판결

(1) (주)A캐피탈 발행 제1회 회사채와 (주)D코리아에 대한 대여금 및 받을어음

과세당국은 M사가 (주)A캐피탈 발행 제1회 회사채 200억원을 을인터내셔널코리아(주)에 양도한 거래는 부실채권을 손비로 처리하기 위한 가장매매로 보아 투자자산처분손실 약 199억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주)D코리아에 대한 대여금 약 109억원, 받을어음 약 1억원을 을인

터내셔널코리아(주)에 양도하여 약 109억원의 채권매각손실을 계상한 거래는 부실채권을 손비처리하기 위한 가장매매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근거로 M사가 (주)A캐피탈 발행 제1회 회사채 및 (주)D코리아에 대한 대여금 등을 올인터내셔널코리아(주)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수취한 T/C 2억원은 미사용시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약 1억원으로 M사가 양도한 받을어음과 일치하여 사실상 2억원의 T/C를 1억원의 현금으로 취득한 것에 불과하며 동 T/C 매입거래를 통하여 (주)A캐피탈 발행 제1회 사채 및 (주)D코리아에 대한 대여금 등의 양도로 위장하여 투자자산처분손실을 손비로 계상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가장매매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M사는 부실자산 양도계약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쌍방의 의무이행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올인터내셔널코리아(주)가 (주)A캐피탈 제1회 회사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사실, (주)D코리아에 대한 대여금의 상환을 촉구하여 (주)A캐피탈의 주식으로 상환 받은 사실 등 인수자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한 사실에 의하여 정상거래임이 입증됨에도 (주)A캐피탈 제1회 회사채 및 (주)D코리아에 대한 대여금 양도거래를 과세당국이 가장행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은 과세당국이 (주)A캐피탈 발행 제1회 회사채와 (주)D코리아에 대한 대여금 및 받을어음의 매각거래를 부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첫째, 상법상 지명채권, 회사채 등은 원칙적으로 권리이전이 가능한 채권으로 거래당사자가 양도계약서상의 의무이행에 따라 그 권리가 이전되는 것이므로 회수가가능성이 희박한 (주)A캐피탈 제1회 회사채와 (주)D코리아에 대한 대여금의 경우에도 그 양도의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양도계약서에 의거하여 쌍방의 의무가 적법하게 이행되었다면 이에 따라 그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 (주)A캐피탈 제1회 회사채의 경우 양수자 올인터내셔널코리아(주)가 회사채의 만기일 이전에 회사채발행회사인 (주)A캐피탈에 상환계획을 질의한 사실, 상환요청 독촉장 발부 등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다른 이에게 (주)A캐피탈 제1회 회사채를 1백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채권매매계약서 및 증권예탁원에 채권등록한 사실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회사채를 인수한 양수자가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았다. 또한 (주)D코리아에 대한 대여금의 경우 양수자 올인터내셔널코리아(주)가 채무자인 (주)D코리아로부터 (주)A캐피탈 주식 2백만주를 대물변제받은 사실이 (주)A캐피탈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주식미발행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주)D코리아에 대한 대여금의 양도사실도 부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았다.

둘째, 부실자산양도계약서가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한 부실자산전문회사인 올인터내셔널코리아(주)와 체결되었고 거래상대방도 이러한 거래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A캐피탈 제1회 회사채 및 (주)D코리아에 대한 대여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주식으로 대물변제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M사가 (주)A캐피탈 제1회 회사채 및 (주)D코리아에 대한

대여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점, 과세당국이 거래당사자로부터 확보한 증빙에 의하여 위의 거래가 가장매매라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당시 IMF구제금융사태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도 국내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일괄인수한 사례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위의 거래를 단지 그 대가가 현저히 낮다거나 T/C로 수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인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위의 거래를 가장매매로 보아 (주)A캐피탈 제1회 회사채의 매각손실 약 199억원 및 (주)D코리아에 대한 대여금의 매각손실 약 109억원을 손금부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다.

(2) (주)A캐피탈 발행 제2회 회사채와 C의료기(주) 외 28개 업체에 대한 매출채권

과세당국은 M사가 (주)A캐피탈 발행 제2회 회사채 200억원, C의료기(주) 외 28개 업체에 대한 외상매출금 약 75억원과 받을어음 약 1억원을 (주)병인베스트먼트에 양도하여 손금계상한 사채처분손실 약 200억원과 매출채권처분손실 약 75억원을 부실채권을 손비처리하기 위한 가장매매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근거로 M사가 (주)A캐피탈 발행 제2회 회사채와 C의료기(주) 외 28개 업체에 대한 매출채권을 양도하고 수취한 T/C 1억원은 미사용시 최소보장금액이 양도받은 어음 금액과 거의 동일하므로 위의 거래는 1억원의 T/C를 현금으로 취득한 것에 불과하며 T/C매입거래를 통하여 처분손실을 손금으로 계상하고자 하는 가장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M사는 (주)A캐피탈 발행 제2회 회사채, C의료기(주) 외 28개 업체에 대한 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을 (주)병인베스트먼트에 양도하고 1억원의 T/C를 제공받았는데 이러한 채권은 민법상 양도가능한 자산이며 자산의 양수도계약은 거래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쌍방의 의무이행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인간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거래를 과세당국이 가장행위로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예비적으로 이 건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매출채권 약 75억원(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의 합)의 대부분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각호에 규정하는 대손요건을 충족하므로 매각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이들 채권은 대손처리한 경우와 효과가 다르지 아니하므로 동 금액을 대손요건이 충족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추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과세당국이 (주)A캐피탈 발행 제2회 회사채와 C의료기(주) 외 28개 업체에 대한 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의 매각거래를 부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첫째, (주)병인베스트먼트는 2000.11.3에 설립하여 2001.6월 말경에 실질적으로 폐업한 법인으로 위의 거래 외에 영업실적이 없으며, 자체적으로 T/C를 교부할 수 있는 법인이 아닌 중개인에 불과하고 부실자산 등의 인수대가로 T/C를 발행해 준 사실도 없다. 또한 부실자산양수도 거래와 관련하여 받을어음 약 1억원을 받았으나 (주)A캐피탈 발행 제2회 회사채와 C의료기(주) 외 28개 업체에 대한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한 사실 또한 없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주)병인베스트먼트는 자체적으로 T/C를 교부할 수 있는 법인이 아닌 중개인에 불과하므로 M사

가 (주)병인베스트먼트와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부실자산양수도계약은 정당한 계약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설사 계약당시 정당하게 체결된 계약으로 보더라도 그 계약은 계약당사자간에 약정에 따른 쌍방의 의무이행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된다는 점에서 M사가 (주)A캐피탈 발행 제2회 회사채와 매출채권 대가로 수취하여야 할 T/C를 제공받지 못한 거래를 정상적으로 양도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M사가 손금계상한 (주)A캐피탈 발행 제2회 회사채 처분손실 약 200억 원 및 매출채권처분손실 약 75억 원을 손금부인한 과세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둘째, M사는 예비적으로 매출채권 대부분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각호에 규정하는 대손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대손처리한 것으로 보아 손금추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매출채권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대부분이 비교적 소액이고 그 채무자가 폐업자이거나 거래가 단절된 외국소재 거래처로서 채권회수가 가능성에도 이를 임의포기한 것으로는 보지는 아니하였다. 또한 M사가 제시한 자료 및 국제청통합전산망(TIS) 조회결과 매출채권 중 일부는 채무자가 국세를 결손처분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당해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처리가 가능한 채권이므로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사실상 제각처리한 것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인정하였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은 법적인 청구권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법인의 의사결정여부와 관계없이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므로 M사가 이를 회계상으로 대손처리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청구권이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이 가능하며(같은 뜻, 대법원 89주2097, 1989.9.12.), 과세당국이 과세표준을 결정할 때 각 사업연도별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3) B사외 15개 업체에 대한 매출채권

과세당국은 M사가 B사외 15개 업체에 대한 외상매출금 약 46억 원과 받을어음 약 12억 원을 정미디어서비스 USA에 양도하여 약 35억 원을 매출채권처분손실로 인식한 거래는 부실채권을 손비처리하기 위한 가장매매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이유로 M사가 B사외 15개 업체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가로 수취한 T/C 약 23억 원은 미사용시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약 12억 원으로 B사외 15개 업체에 대한 매출채권 중 정상적으로 회수가 가능한 채권인 받을어음과 거의 같으며 B사외 15개 업체에 대한 매출채권을 양수한 정미디어서비스 USA가 이를 직접 회수하거나 추심한 사실도 없으며 실제로는 양도한 받을어음을 M사가 직접 추심하여 송금하였다. 이는 사실상 T/C를 현금구매한 것으로서 T/C구매행위를 통하여 B사외 15개 업체에 대한 매출채권을 매각한 것으로 위장한 가장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M사는 대손처리가 가능한 회수불능채권 약 46억 원과 정상회수가 가능한 받을어음 약 12억 원을 합한 58억 원을 미국에 소재하는 barter-trading 전문회사인 정미디어서비스 USA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T/C 약 23억 원을 수취하고 차액인 35억 원을 매출채권처분손실로 계상하는데 이러한 채권은 민법상 양도가능한 자산이며 자산의 양수도계약은 거래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쌍방의 의무이행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인간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거래에 해당하나 과세당국이 가장행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과세당국이 B사의 15개 업체에 대한 매출채권 및 받을어음의 매각거래를 부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첫째, 과세당국은 M사가 사실상 T/C를 현금구매하면서 부실매출채권을 매각한 것으로 가장하였다고 주장하나 M사가 제시한 계약서에는 양수도자산목록이 첨부되어 있으며 약정상 M사가 매출채권의 회수활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이 건 거래를 가장매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부실자산을 매각한 거래를 가장행위로 판단하는 기준은 통상적으로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수자의 주업종이 부실자산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자인지 여부, 거래가액이 적정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데 위의 거래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부실매출채권의 양수자인 정미디어서비스 USA는 전문적으로 부실자산을 인수하고 그 대가로 T/C를 제공하는 barter-trading 회사인 점, 부실매출채권 중 약 38억원은 당해 연도 중에 대손처리도 가능한 매출채권으로 M사가 매출채권처분손실로 계상한 약 35억원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었다는 점, 일부 대손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매출채권 약 8억원도 그 채무자가 휴업 등으로 상당부분은 대금회수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M사가 손금으로 계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실매출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가장하였다는 과세당국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과세당국의 매출채권처분손실을 손금부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다.

IV. 바터거래의 효과 및 조세마찰

1. 바터거래의 효과

가. 절세효과

바터거래를 통해 M사가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경제적 효과는 M사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불가능했던 부실한 채권들을 채권처분손실로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얻게 되는 절세효과이다. 법인세법에서는 기업회계기준과는 달리 대손금의 범위와 대손요건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의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정리채권 및 화의채권,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등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하거나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손금산입시기를 이연시키거나 분할하여 손금처리할 수 없다. 따라서 기업들은 회계상 대손처리한 부실채권이라도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과세당국에 채권회수를 적극적으로 수행했고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을 충족했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M사의 경우 바터거래를 통해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부실채권을 바터거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회사에 양도함으로써 채권처분손실 등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므로 절세효과의 경제적 효익을 누리게 된다. 다음의 <표 2>는 M사가 바터거래를 통해 얻게 되는 절세효과를 요약한 것이다.

<표 2> 절세효과

처분대상자산	양수회사	처분손실	절세효과	조세심판원 결론
A캐피탈 제1회 회사채	을인터내셔널코리아(주)	199억	49.75억	손금인정
D 코리아 대여금		109억	27.25억	손금인정
D 코리아 받을어음				
A캐피탈 제2회 회사채	(주)병인베스트먼트	200억	—	손금불인정
C의료기 외 28개 업체 외상매출금		75억	—	손금불인정
C의료기 외 28개 업체 받을어음				
B사의 15개 업체 외상매출금	정미디어서비스 USA	35억	8.75억	손금인정
B사의 15개 업체 받을어음				
계		618억	85.75억	

M사는 A캐피탈 제1회 회사채, D 코리아 대여금, D 코리아 받을어음을 을인터내셔널코리아(주)에 T/C 2억을 받고 처분하고 처분손실을 각각 199억과 109억을 재무제표에 계상하였다. 또한 B사의 15개 업체 외상매출금, B사의 15개 업체 받을어음을 정미디어서비스 USA에 T/C 23억을 받고 처분하여 처분손실 35억원을 장부에 계상하였다. M사의 한계세율이 25%라고 가정하면 M사가 바터거래를 통해 절감되는 세액은 85.75억원이다. 물론 M사는 법인세법상 매출처 등의 부실화로 인하여 회계상 대손충당금을 설정함으로써 최대 매출채권(장부금액)의 1%까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부실채권은 미래에 일정한 시점에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세효과는 세무상 대손충당금 1%와 미래 절세효과의 현재가치를 차감해야 바터거래로 인한 순절세효과를 산출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사례에서는 대손이 확정되는 시기가 불확실하며 이익의 변동가능성이 크다고 가정하여 위의 효과를 무시하고 절세효과를 산정하였다.

나. 현금흐름개선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바터거래의 절세효과를 제외하고 M사가 얻게 되는 가장 두드러진 경제적 효익은 현금흐름의

개선을 통한 유동성 향상일 것이다. M사는 회수가능성이 희박한 부실채권을 을인터내셔널코리아(주), (주)병인베스트먼트, 정미디어서비스 USA 등에 처분하고 약 26억원 상당의 T/C를 수취하여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현금흐름이 양호해지고 기업의 유동성도 향상되었다.

바터거래로 인한 두 번째 경제적 효익은 재무제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이다. M사 수취한 T/C 26억원을 향후 5년에 걸쳐 지급비율이 50%인 마케팅비용으로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의 재무적 효과를 부실채권을 그대로 보유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요약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바터거래의 재무적 효과

상황 1 : 부실채권을 5년간 보유하는 경우						(단위 : 억원)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손익효과						52
현금 광고비	10.4	10.4	10.4	10.4	10.4	52
총 광고비	10.4	10.4	10.4	10.4	10.4	52
자산효과						△52
현금잔액	△10.4	△10.4	△10.4	△10.4	△10.4	△52
상황 2 : 바터거래를 하는 경우						(단위 : 억원)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손익효과						26
현금 광고비	5.2	5.2	5.2	5.2	5.2	26
TC 광고비 (선급비용 중 당기비용 인식분)	5.2	5.2	5.2	5.2	5.2	26
총 광고비	10.4	10.4	10.4	10.4	10.4	52
자산효과						△26
현금잔액	△5.2	△5.2	△5.2	△5.2	△5.2	△26

<표 3>에서는 M사가 T/C의 수취시점인 2010년부터 5년이 경과한 2014년까지 총 54억원의 마케팅비용을 사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는데 그 이유는 마케팅비용에 대한 지급비율이 50%인 경우 T/C 26억원을 모두 소비하기 위해서는 54억원의 마케팅비용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표 3>에 제시되어 있는 손익효과를 비교해 보면 M사가 부실채권을 5년간 그대로 보유한다면 마케팅비용으로 52억원을 인식하였을 것이다. 반면 회사가 바터거래를 통해 26억원의 T/C를 수취하여 52억원의 마케팅비용에 충당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26억원(52억원-26억원)만큼 광고비가 경감되어 26억원의 광고비만 인식하게 된다.¹⁰⁾ 따라서 바터거래를 하는 경우가 부실채권

을 보유하는 경우에 비해 매년 법인세를 고려하기 전 5.2억원의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

다음으로 자산효과 중 현금잔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부실채권을 5년간 그대로 보유한 다면 52억원의 마케팅비용 중 26억원의 추가적인 현금지출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T/C를 사용하는 바터거래와 비교할 때 매년 5.2억원의 현금잔고가 줄어들거나 미지급금이나 차입에 따라 매년 5.2억의 단기 부채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바터거래는 현금잔고를 늘리거나 단기부채를 줄임으로써 기업의 유동성을 향상시킨다.

다. 비세금비용 효과

이와 같이 위에서는 바터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과 비세금적 측면에서 경제적 효익에 대해 살펴 보았다. 그러나 바터거래는 다음과 같은 비세금측면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첫째, M사가 바터거래 회사로부터 T/C를 제공 받게 되는 경우 M사는 T/C를 사용하기 위해 바터거래 회사와 계약관계가 있는 다른 거래처와 거래를 해야 하는데 이는 M사가 기존에 거래하던 거래처와의 거래중단을 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일방적인 거래 중단은 M사의 입장에서 기존 거래회사와 형성된 신뢰관계를 포기하고 새로운 기업과의 신뢰관계를 맺는 것으로 실무상 번잡스러울 뿐만 아니라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M사 전체의 입장에서 T/C를 사용하는 것이 현금지출의 감소액 만큼 경제적 효익이 있을 수 있으나, 기업 내부 부서간에는 이해상충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영업부서에서는 기업이 갖고 있는 부실자산(이월 재고자산, 관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악성 매출채권, 환급성이 없는 유가증권 등)을 T/C와 교환하여 사용하는데는 큰 불만이 없을 수 있으나 마케팅부서에서는 현금 대신 T/C를 사용하여 광고비, 판매촉진비 등을 지출할 특별한 유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마케팅부서에서는 기존에 거래하던 거래처와 거래를 중단하고 새로운 거래처와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 거래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T/C사용을 꺼릴 수 있다.

라. 조세마찰 비용

바터거래를 통해 조세를 최소화하는 전략은 다른 상황이 일정한 경우 기업의 현금흐름과 재무구조를 양호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으나 대부분의 경우 조세 외적인 측면에서 추가적인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조세의 절감효과를 축소하거나 오히려 능가하게 되어 바람직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다. 즉 매년 조세를 최대한 절감하도록 모든 조세의 혜택을 누리는 경우 각 연도별로 납부해야 할 세금의 변동폭이 커지거나 다른 유사한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조

10) 여기에서 부실채권과 T/C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채권처분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채권처분손실은 교환거래가 발생할 당시에만 발생하며 이후 기간에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재무적 효과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세를 납부하게 되면 이는 과세당국의 세무조사의 가능성을 증가시키게 된다. 과세당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기업의 정상적인 업무의 차질이 생기며 과세당국의 정밀조사에 의한 과세소득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과거에 절감되었던 세금을 초과하여 막대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러한 과세당국의 주요 감시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 조세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사용하지 않고 매년 일정한 수준으로 세액을 납부하는 조세평준화전략을 선택하는 기업들이 더 많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M사의 경우에도 바터거래를 통한 세무계획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차후의 세무조사 등과 같은 조세마찰로 인한 비용을 동시에 고려해야만 한다.

2. 바터거래로 인한 조세마찰

가. 가장매매

M사의 사례는 M사가 1999년과 2000년에 부실자산을 아래와 같이 바터거래를 하는 회사에 매각하고 계상한 처분손실에 대해 과세당국이 매매거래를 가장매매로 보아 처분손실의 손금을 부인한 사건으로 사건의 내역과 조세심판원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 4>과 같다.

<표 4> 사건의 내역과 조세심판원의 결론

처분대상자산	자산가액	양수회사	처분손실	조세심판원 결론
A캐피탈 제1회 회사채	200억	을인터내셔널코리아(주)	199억	손금인정
D 코리아 대여금	109억		109억	손금인정
D 코리아 받을어음	1억			
A캐피탈 제2회 회사채	200억	(주)병인베스트먼트*	200억	손금불인정
C의료기 외 28개 업체 외상매출금	75억		75억	손금불인정
C의료기 외 28개 업체 받을어음	1억			
B사의 15개 업체 외상매출금	46억	정미디어서비스 USA	35억	손금인정
B사의 15개 업체 받을어음	12억			

* 처분손실 자체는 기각되었으나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채권(약 75억원)은 대손으로 손금인정됨

조세심판원은 M사가 을인터내셔널코리아(주) 및 정미디어서비스 USA와 수행한 거래에서 발생한 자산처분손실(을인터내셔널코리아(주) : 약 299억원, 정미디어서비스 USA : 약 35억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였다. 바터거래가 가장매매가 아니라 실질거래로 판단한 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산매각손실로 계상한 금액(B사의 15개 업체 매출채권에 대한 자산매각손실 : 약 35억원)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손금(당해 연도 중 대손처리가 가능한 매출채권 : 약 38억원)으로

계상할 수 있었다. 둘째, 채무자 대부분이 지급자력이 없으므로 부당저가 양도는 아니다. 셋째, 한국은행에 회사채 매매신고를 필하였다. 자산의 매매에 필요한 법적 절차(등기, 등록 및 신고)를 필하는 경우 실제적인 채권의 양도로 본다. 넷째,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자가 아니고 양수자가 부실자산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자이며 거래가액이 적정하다. 다섯째, 양수 회사채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양수대여금에 대해 대물변제를 받는 등 양수회사는 기본적인 회수활동을 했다. 여섯째, 계약서에 의한 쌍방의 의무가 적법하게 이행되었으며 양수도 자산목록이 기재되었고 양수도 자산목록이 기재된 계약서 작성 및 관련의무의 이행을 적법한 양수도로 보았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M사가 (주)병인베스트먼트와 거래를 통해 계상한 회사채 및 매출채권 등에 대한 처분손실(약 275억원)에 대해 과세당국이 손금부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손금을 부인한 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산의 양수회사는 M사와의 거래 이외에는 영업실적이 전무하고 양수회사는 자체적으로 T/C를 발행하는 회사가 아닌 중개회사임에도 T/C를 매입하거나 발행해 준 적이 없으며 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다.

상기의 조세심판원의 판결의 타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매매’는 ‘허위행위’와 동일한 의미로써 일반적으로 민법 제108조에 규정되어 있는 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를 의미한다. 가장매매는 진실한 법률행위를 표면에 드러내지 않고 그와 상이한 다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것처럼 외관상으로 가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매매는 실질적으로 매매라는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 민법에서는 무효로 한다. 따라서 가장매매에 대해서는 세법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가장매매에 의해 다른 법률행위가 은닉된 경우 세법상의 효력은 이러한 은닉된 행위에 근거하여 과세가 이루어진다. 현행 세법에서는 가장매매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에 규정된 ‘실질과세의 원칙’에 근거하여 가장매매에 대한 세법상의 효력을 해석한다.

위의 사례에서 M사의 바터거래가 진실된 법률행위인 매매에 의해 이루어졌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주요한 세무상 쟁점사항이다. M사가 을인터내셔널코리아(주), 정미디어서비스 USA 및 (주)병인베스트먼트와 수행한 바터거래를 매매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계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계약서상의 내용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 등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명의, 외관 등의 경제적 실질과 다른 경우에는 후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에 따라 M사가 을인터내셔널코리아(주) 및 정미디어서비스 USA와 수행한 바터거래를 실질거래로 판단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다음의 사유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을인터내셔널코리아(주) 및 정미디어서비스 USA는 바터거래를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동 법인의 협력회사가 전세계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현금대용증권인 T/C를 부실자산 인수대가로 지급하는 형태로 국내에서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으므로 M사의 바터거래 당사자는 실질적으로 명확히 존재한다. 둘째, 을인터내셔널코리아(주) 및 정미디어서비스 USA는 매각손실이 예상되는 부

실자산을 보유한 M사로부터 부실자산을 인수하고 인수대가로 T/C를 발행하며 M사는 부실자산의 대가로 수취한 T/C를 기업의 영업활동과정에서 경상적으로 지출하는 비용 등에 현금과 같이 사용함으로써 부실자산의 원래가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바터거래가 이루어졌으므로 당사자간에는 거래의사가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상법상 지명채권, 회사채 등은 원칙적으로 권리이전이 가능한 채권으로 거래당사자가 양도계약서상의 의무이행에 따라 그 권리가 이전되는 것이므로 회수가능성이 회복한 부실채권이더라도 양도의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양도계약서에 의거하여 쌍방의 의무가 적법하게 이행되었다면 이에 따라 실질적인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A캐피탈 제1회 회사채를 만기일 전에 을인터내셔널코리아(주)가 상환계획을 질의한 사실, 이후 상환요청 독촉장 발부 등 권리행사는 한 사실, 증권예탁서에 채권등록한 사실, 정미디어서비스 USA가 한국은행에 채권매매신고를 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M사의 부실자산의 양도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에 반해 조세심판원이 M사가 (주)병인베스트먼트와 수행한 바터거래를 실질거래가 없는가장 매매로 판단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다음의 사유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주)병인베스트먼트는 실질적으로 폐업한 법인으로 M사와의 거래외에는 영업실적이 없으며 자체적으로 T/C를 교부할 수 있는 법인이 아니라 중개인에 불과하다고 하나 그 실체가 불분명하여 바터거래의 당사자로 인정받기 어렵다. 둘째, M사는 부실자산을 (주)병인베스트먼트에 양도하고 T/C 1억원을 제공받은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실질적으로 T/C를 수취한 사실이 없어 바터거래를 통한 부실자산의 매매의사 여부가 불확실하다. 셋째, (주)병인베스트먼트가 M사로부터 받은 부실자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으며 수취한 자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어 실질적으로 자산을 양도했다고 볼 수 없다.

나. 가공거래

바터거래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세무상 쟁점은 부실채권의 가공채권 해당여부이다. 대부분의 부실채권은 정상적인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이 아닐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재고수불부 또는 실제 재고조사 등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기가 경과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채권의 실재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거래가 가공임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국세청의 통합전산망(TIS)상에 나타나는 자료상과의 거래를 제외하고는 거래처와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정확히 신고하여 왔다면 재고수불부 등을 거래처와 정확히 대사하는 방법, 다시 말해 정밀한 채권조회 정도 밖에는 없을 것이다. 재고자산 등의 실물흐름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으면서 회계장부상에 매출, 매입 등을 기표하여 순이익 등을 조작하는 일련의 거래에 대하여 거래의 양 당사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신고·납부의무를 준수한다면 과세당국은 정밀한 조사를 하지 않는 한 이를 포착하기는 어렵다. 이는 결국 장부상 자산의 수량 또는 금액이 실지자산의 수량 또는 금액보다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는 결과를 초래하

며 그 차이는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장부상 계상하고 있는 것이므로 가공자산으로 귀결될 것이다. 만약, 바터거래 대상 채권 중 이러한 가공채권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과세당국이 인지하게 된다면 바터거래 자체를 부인하고 관련 규정에 의한 세무처리를 할 것이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76-106...12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에 의하면,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대여금 등 가공채권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귀속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동 가공채권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또한 재고자산의 부족액은 시가에 의한 매출액 상당액(재고자산이 원재료인 경우 그 원재료 상태로는 유통이 불가능하거나 조업도 또는 생산수율 등으로 미루어 보아 제품화되어 유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품으로 환산하여 시가를 계산함)을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동 가공자산은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이를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¹¹⁾ 따라서 과세당국에 대한 가공채권 정보는 바터거래 자체를 가장매매로 오인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할 것이며 이에 따라 바터거래의 본연의 목적을 대부분 희석시킬 것이며 세무조사와 같은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의 조세마찰의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또한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해 가공거래를 발생시키는 순간부터 납세자에게 가공채권 계상액 만큼의 무거운 세부담을 가중시키게 되어 납세자의 세부담은 증가할 것이다.

다. 소멸시효가 경과된 채권

바터거래와 관련하여 소멸시효가 경과된 채권의 처분손실이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그 인정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관련 예규판례(서면2팀-1116, 2005. 07.18)에 의하면 세무상 소멸시효가 경과한 채권을 매각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손실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시가로 매각할 때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소멸시효가 경과한 채권이라도 원칙적으로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M사의 조세심판(국심2003중1969, 2004. 07.14)에서 바터거래를 인정하기 위한 정황적 요건으로 바터거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양도대상 채권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를 검토하고 있다.¹²⁾ 상기 심판례에서 보듯이 조세심판원은 매출

11) 처리불분명한 타계정대채원재료로 매출누락제품을 제조했다는 증거가 없는 한, 당해 원재료 및 제품은 각각 익금가산 소득처분하고 법인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장기매출채권 중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일괄하여 대손상각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제출한 대손상각명세서 등을 근거로 각 매출채권별로 대손상각 요건과 실제 회수여부 등을 재조사한다(국심 85구 1988, 1986.02.26),

12) 매출채권 중 약 38억원은 당해 연도 중에 대손처리도 가능한 매출채권으로 청구법인이 매출채권매각 손실로 계상한 약 35억원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M사가 손비를 계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매출권을 양도한 것으로 가장하였다는 과세당국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았다.

채권처분의 가장매매를 판단하기 위한 정황적 요건으로 채권의 매각으로 인한 손금인식 가능액보다 대손 등으로 인한 손금인정 가능액이 더 클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한 소멸시효가 경과하고 경정청구기간도 경과한 채권의 처분손실에 대하여 손금인정여부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관련 예규판례(서면2팀-1116, 2005.07.18)에 의하면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하고 대손금의 경정청구기간도 경과한 상태에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시가로 매각할 때 발생하는 매각손실은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예시하고 있다. 상기의 질의회신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소멸시효기간 및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채권일지라도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은 법인세법 제34조와 동법 시행령 제62조 등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다음의 대손요건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으면 반드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하는 사유이기 때문에 손금산입시기를 이연시키거나 분할하여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 “소멸시효”란 일정기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당해 권리에 대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하는 것을 말하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대손으로 인정하는 세법규정의 취지는 채권자가 채권발생일 이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제반 법적 조치 등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동 채권에 대하여 대손처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인데 구체적인 회수노력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소멸시효 경과는 임의 채권포기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아래의 <표 5>는 각 종 법에서의 소멸시효를 나타내고 있다.

<표 5> 각 종 법에서의 소멸시효

채권의 종류	근거법	소멸시효
외상매출금, 미수금 등 상행위로 인한 채권	상법	3년
대여금 및 선급금 등 일반 민사채권	민법	10년
어음수표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수표	어음수표법	어음 : 3년, 수표 : 6개월

소멸시효를 적용함에 있어 실무적으로 혼란스러운 부분이 바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발생했을 때이다. 시효의 중단(민법 제168조 내지 제178조)이란 시효의 진행 중에 청구(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지급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 등을 포함함),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의 사유

가 발생한 것으로 당 중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에 진행하던 시효가 중단되는 것으로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절차가 완성된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기간이 새로이 진행된다. 따라서 당해 중단사유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당 채권에 대한 회수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세법상 대손처리를 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 ② 정리채권 및 화의채권으로 채무자에 대한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대손처리 할 수 있다.
- ③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으로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에 대하여는 별도의 재산확인절차 없이 손금산입 할 수 있다.
- ④ 수출채권으로서 관련 기관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채권으로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거래상대방의 인수거절 또는 지급거절 등으로 당해 채권의 국내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 면제허가를 받은 경우 대손처리를 할 수 있다.

(2) 아래의 사유는 대손을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한 때 세무상 대손처리 가능한 사유로서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으면 이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대손처리 할 수 없다.

- ①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당해 사유들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그 사유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없으며 채무자의 재산상태,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불능사실(무재산)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 ②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어음채권 등으로 당 사유는 채무자가 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았는지 여부 또는 소구권 행사여부에 불구하고 대손처리가 가능하다.
- ③ 국세결손처분된 채권으로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별도의 재산확인 절차 없이 손금산입할 수 있다.
- ④ 소액채권으로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의 채권(채무자별 채권가액 합계액)은 별도의 대손요건 구비 없이 직접 대손처리할 수 있다.

3. 조세마찰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

최근의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등을 바터거래를 통해 처분하는 거래유형이 증가하면서 기업과 과세당국간에 세무상 쟁점에 대해 서로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증가하고 있다. 그 동안에 과세당국은 새로운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과세여부를 결정할 때 단순히 기획재정부 등의 유권해석에 의존하여 과세를 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과세당국의 오래된 관행은 납세

자로 하여금 가장매매, 가공거래 등을 통한 조세회피유인을 제공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과세당국의 체계적인 관련 세법의 정비를 통한 조세회피방지대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 또한 아래와 같은 개선방안을 통해 바터거래로 인한 과세당국 간의 조세마찰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가. 채권의 실재성 확인 절차

바터거래와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사항은 각 채권의 실재성이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바터거래 대상으로 처리할 수 없음은 명백하며 이러한 경우에 궁극적으로 과세당국에서 바터거래 자체를 부인하여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의 조세마찰의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각 사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의 ‘매출채권 세금계산서 합계표’ 상의 금액의 확인을 통하여 가장 기본적인 실재성이 검증되어야 하며 계속거래처에 대한 계약서, 담보설정 내용 등도 확인되어야 한다. 또한 세금계산서 합계표에서 확인된 거래처에 대해서도 거래 당시에 보유하고 있던 실재성 확인자료를 가능한 한 많이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실재성 확인을 위한 자료로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영업부 관리자료 등이 있다.

나. 채권 양도금액의 공정성 확보

채권 양도금액의 공정한 평가는 바터거래를 통한 거래 당사자간의 매매의사를 간접적으로 확인하여 바터거래를 과세당국으로부터 실질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채권의 평가는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향후 경영성과 및 그에 따른 미래현금흐름 등을 추정하여 적정할 인율로 할인하는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채권의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에 있어 채무자의 경영성과를 분석하여 미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는 것은 사실상 다음과 같은 이유로 어려울 수 있다. 첫째, 현금흐름을 추정하기 위하여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이나 금융소득으로 인한 예측가능한 확실한 현금흐름이 가정되어야 하나 부실채권의 경우 채무자의 소재 자체가 폐업 등으로 인하여 불분명하거나 신용조사 전문기관의 의뢰를 통하여도 채무자의 재산 유무 파악이 곤란한 상황에 있어서 채무자의 자산처분으로 인한 예측 가능한 현금흐름이나 영업활동 등이 예상되지 아니한다. 둘째, 설사 처분대상 자산 등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률상 채권 회수를 위한 우선순위의 문제 및 그에 따른 회수 가능 금액의 파악이 곤란하다. 셋째, 소재가 파악되고 있는 채무자의 경우에도 자료 입수의 한계로 인하여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의 발생 유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채무자에 대한 현금흐름의 추정 또한 어렵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채무자의 경영성과에 따른 미래 회수가능액의 추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과거 채권의 기별 회수를 실적을 바탕으로 미래의 회수율을 추정하고 이를 매각대상채권에 적용하여 미래 회수가능액

을 산출한 후 동 금액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채권의 가치를 산정한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단계를 거친다. 1단계로 일정기간(5년~10년) 채권의 과거 회수실적을 분석한다. 과거 회수실적을 분석하는데 있어 분석대상 채권 및 분석기간은 회사채권의 성격과 자료의 입수가능성, 분석의 편의성 및 채권별 회수기일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2단계로 일정기간 매출채권의 회수율을 산출한다. 회수실적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채권연령별 전기 잔액 대비 당기 회수율(회수율=당기 회수율÷전기 채권잔액)을 산출한다. 3단계에서는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채권연령별 회수율의 추세를 예측한다. 일정기간 채권연령별 과거 회수율을 바탕으로 채권연령별 회수율의 추세를 함수식으로 도출한다. 4단계에서는 개별 채권별 향후 일정기간(3년~5년) 회수율을 산출한다. 추정된 함수식에 따라 거래처별 미래의 회수율을 예측하고 동 회수율에 따른 향후 일정기간의 거래처별 현금회수율을 산출한다. 마지막 5단계에서는 일정기간 추정된 회수현금흐름을 할인하여 채권의 가치를 평가한다. 채권잔액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할인 후 미래추정회수율을 곱하여 예상회수금액의 현재가치를 계산한다. 결론적으로 과거실적 회수율의 산출은 위에서 언급한대로 채권 발생 및 회수실적을 분석한 후 예상추정회수율을 산출하고 산출된 회수율을 개별채권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다.

다. 채권의 전반적인 대손요건 구비¹³⁾

과세당국이 바터거래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개개 채권별 대손요건을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채권별 대손요건을 구비하는 것은 세무상 위험을 '0'으로 수렴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다만 원칙적으로 대손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는 계속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바터거래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며 현재 실적이 양호하고 정상영업 중인 거래처에 대한 대손요건을 구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대손사유와 당해 채권회수노력이 정황상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채권회수조치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처분손실액을 과세당국이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채권회수조치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 즉 외부기관의 확인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 받을 수 있는 것은 이를 구비하여야 하며 확인서나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사업의 폐지, 행방불명, 무재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법무팀 혹은 영업팀의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한 조사보고서 등에 의할 수 있다(법인 46012-1341, 1995.5.16). 물론 이러한 사항을 모두 구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일부라도 보완하여 객관적인 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3) 위의 요건은 과세당국이 바터거래를 부인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정상적인 거래의 일부로 바터거래를 행하는 기업은 이와 같은 요건이 불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대손요건을 갖추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려우나 과세당국간의 완전히 조세마찰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① 채무자의 본적지, 최종 및 직전 주소지(법인의 경우는 등기부상 소재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상 등록된 소유재산이 있는지의 여부
- ②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사항 : 강제집행불능조서
- ③ 다른 장소에서의 사업영위 여부
- ④ 기타 채무자의 거래처, 거래은행 등에 대한 탐문조사 내용 등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사항
- ⑤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 대하여 같은 조사내용을 기재한 서류
- ⑥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의 경우에는 은행의 부도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
- ⑦ 채무자의 소유재산이 없는 경우 확인서류는 법원의 강제집행 불능조서 작성 등 법적조치에 의하여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도 확인 가능함

라. 사업폐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

채무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적절하게 대손처리하고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 받지 않기 위해서는 ① 채무자가 청산에 이르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채권을 회수하려는 노력을 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한 필요한 서류를 구비(예 : 채무독촉, 재산회수, 가압류 등)하고 ②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환가처분(추심한 재산의 가액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모두 분배하는 행위 포함)하고 총부채가 총자산을 초과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상태로서 사업을 폐지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사업을 폐지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요건을 세무상 확일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우나, 사업폐지 사실이나 무재산 사실과 같이 근거서류의 구비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위의 요건을 채권관리부서에서 확인하여 작성한 조사보고서도 증빙서류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사보고서에 일반적으로 삽입되어야 할 필요적 기재사항은 전반적인 대손요건의 구비서류와 대동소이하다.

사업폐지와 관련된 주요 예규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한 후 미수금을 일부만 회수한 상태에서 사실상 사업을 폐지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청산과정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분배가능재산이 없는 잔여채권을 포기한 것은 대손금으로 인정되나 부당행위부인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되지 아니하고(서면2팀-2716, 2004.12.23), 특수관계 법인세 대한 채무보증이나 담보제공으로 대위변제금액과 대여금에 대해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 않고 포기해 회수 못한 경우이므로 그에 대한 대손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심사법인99-101, 1999.06.25). 또한 관계회사 대여금은 관계회사가 해산등기했어도 대손처리할 수는 없고 모든 자산을 환가처분하고 청산을 하여도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하게 된 때에 처리하며(국심 98부2096, 1999.01.18), 해당법인이 총자산이 총부채에 미달하여 채무를 포기받아 청산절차를 종결하는 경우 그 회수가능 없는 채권을 포기한 법인은 대손처리가 가능하다(법인46012-2404, 1998.08.25).

V. 결 론

본 연구는 아직까지 연구가 미비한 바터거래를 통한 조세계획의 마찰가능성을 M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바터거래는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비해 아직까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국외에서는 바터거래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그에 따라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으며 거래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경기침체와 불황으로 인한 불경기에서 바터거래는 기업의 부실자산을 기업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산과 교환함으로써 기업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유동성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기업들은 이러한 새로운 바터거래를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과세당국과의 조세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

조세회피는 순이익의 증가뿐만 아니라 조세의 절감으로 인한 실질적인 현금유출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기업들은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조세회피행위를 하고 있다. 조세회피행위는 탈세와 절세의 중간개념으로 위법적이지는 않지만 현행의 미비한 세법규정을 교묘히 이용하여 정상적인 범형식이나 거래형태가 아닌 이상한 방법으로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거나 배제시키려는 조세절감시도의 행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조세회피의 유형으로는 파생상품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 합병을 통한 조세회피, 결손금을 이용한 조세회피,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 현물출자를 통한 조세회피 등 다양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그간의 연구가 미흡한 바터거래를 통한 조세계획의 마찰가능성을 의로기기 제조관매업체인 M사의 조세심판원결정문(국심2003중 1969, 2004.07.14)을 참고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바터거래는 절세효과, 현금흐름개선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비세금비용으로 인한 효과와 조세마찰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M사와 과세당국간의 바터거래를 통한 조세계획의 마찰가능성으로는 가장매매, 가공거래, 소멸시효가 경과된 채권 등의 세무상 쟁점사항이 있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바터거래의 조세마찰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바터거래와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사항은 각 채권의 실재성이므로 바터거래를 수행하는 기업들은 부실채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의 매출채권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의 금액을 확인하여 가장 기본적인 실재성이 확인되어야 하며,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영업부관리 자료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둘째, 채권 양도금액의 공정성 확보는 거래 당사자간의 매매의사를 간접적으로 확인하여 바터거래를 과세당국으로부터 가장매매가 아닌 실질거래로 인정받아 조세마찰의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셋째, 과세당국이 바터거래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개별 채권별로 대손요건을 판단하므로 채권별 대손요건을 구비하는 것이 필요한데 구체적인 서류로는 외부기관의 확인서 또는 증명서, 사업의 폐지, 행방불명, 무재산 등에 관한 조사보고서 등이 있을 수 있다. 넷째, 채무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적절

하게 대손처리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는 채무독촉, 재산회수, 가압류 등의 서류,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환가처분하고 잔여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폐지하였음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두형. 2008.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 세무학연구 제25권 제3호 : 137 - 159
- 김진희 · 정재욱. 2006. “기업의 재무적 특성이 조세회피행위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제23권 제4호 : 97 - 123
- 국세청 예규판례. 1995. 법인 46012 - 1341
_____. 2004. 서면2팀 - 2716
_____. 1999. 심사법인99 - 101
_____. 1998. 법인 46012 - 2404
- 고윤성 · 김지홍 · 최원욱. 2007. “조세회피와 기업특성 및 기업가치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24권 제4호 : 9 - 40
- _____. 백혜원. 2010. “가족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27권 제2호 : 49 - 76
- 정운오 · 김갑순. 2007. “A회사의 Corporate Trade 사례 - 세무계획의 계약적 측면 -”. 세무학연구 제24권 제3호 : 205 - 227
- 정중복 · 홍정화. 2010. “중소기업 CEO의 윤리경영의식이 세제인지도, 납세태도 및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제27권 제1호 : 167 - 197
- 조세심판원결정문. 2004. 국심2003중 1969
_____. 1999. 국심98부 2096
- 이동식. 2008. “조세회피행위 방지와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 세무학연구 제25권 제2호 : 65 - 92
- Scholes, M. S., M. A. Wolfson, M. Erickson, E. L. Maydew, and T. Shevlin, 2009. Taxes and Business Strategy : A Planning Approach, Prentice Hall.

Effective Tax Planning by M Company

- The Possibility of Tax Friction through Barter - Trading and Improvement -

Shawn, Hyuk* · Park, Sung Jin** · Lee, Hyo Ik***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case study is to analyze the possibility of tax friction and other taxation issues arising between taxpayers and tax authorities for barter transactions by examining the case of M company, a manufacturer and seller of medical devices. This study suggests following improvements to reduce possible tax frictions.

First, the basic checks about barter—trading are bond's existence so companies performing barter—trading should confirm bad bond's amount by the VAT report and have contracts, tax bill, account statements, sales management's data.

Second, the tax authorities are judging the condition of bad—debt by individual bonds even if barter—trading is not satisfied, so it is necessary to make preparation confirmation or proof of an outside agency, the abolition of the business, missing, insolvency.

Third, barter transactions are recognized as the real deal from the tax authorities through fair assessment of bond.

Fourth, demanding debt, asset recovery, documents of temporary attachment, abolition in the absence of the property should be proved to be applied to recognize bad debt expense and not to be applied the denial of transactions.

〈Key words〉 barter—trading, tax friction

* Doctoral student,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 Doctoral student,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Sungkyunkwan University